

학과간 연계교육과정 운영 협약서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전공은 영진전문대 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전공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전공과 영진전문대학 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전공은 상호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학과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 한다.

제2조(연계교육과정의 운영) 양 대학의 교류학과 연계교육과정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제3조(연계교육교재의 공동개발) 양 대학 교류학과의 연계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 개발한다.

제4조(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교수교류 및 협력)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술교류를 위하여 교수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제6조(연계교육과정 운영방법) 양 학과(전공)의 연계교육과정은 해당학과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연계교육과정이수 후 조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대구대학교의 교류학과 진학을 희망할 시는 우선 선발(정원외 특별전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학과(전공)간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연계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과간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구성인원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약 기간 및 효력)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교류학과간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2005년 3월 1일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전공 주임교수

이해만

영진전문대학
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전공팀장

07 186 21

연계교육과정 편성표

대 학	학년	학기	연계교과목 1	연계교과목 2
영진전문대학 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전공	1	1	디자인론	평면조형
		2	컴퓨터그래픽	시각디자인(I)
	2	1	시각디자인(II)	편집디자인(I)
		2	시각디자인(II)	편집디자인(II)
	3	1	광고디자인 스튜디오(I)	패키지 디자인 스튜디오(I)
		2	시각디자인 스튜디오(II)	디자인마케팅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전공	4	1	시각디자인 스튜디오(III)	패키지디자인 스튜디오(III)
		2	광고디자인 스튜디오(IV)	디자인포트폴리오

2005. 3. 1.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전공 주임교수

영진전문대학
디자인계열 시각디자인전공팀장

이 해 만

이 해 수